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
審 查 報 告 書

제 출 년 월 일 : 1992. 7. .

제 안 자 : 행정재무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6월 2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1992년 6월 27일

다. 상정일자 : 제11회 임시회 (폐회중)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('92. 7. 2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金榮俊)

가. 제안이유

-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정원관리의 효율화 일환으로 기능직 10등급 정원을 감축하여 9등급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기능직 정원중 10등급 사무보조원(타자) 1명과 지방방호원(방호) 1명을 기능직 9등급으로 조정개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金熙中)

우리구의회 사무국 직원중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정원관리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 정원중 "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2인"을 "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1인 및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1인"으로 하고, "10등급 지방방호원 2인"을 "9등급 지방방호원 1인 및 10등급 지방방호원 1인"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심 사 결 과 : 원안대로 가결

(재적의원 11명

- 출 석 10명
- 찬 성 10명
- 반 대 없음)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
의안 번호	82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1992년 6월 26일
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정원관리의 효율화 일환으로 기능직10등급 정원을 감축하여 9등급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한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기능직 정원중 10등급 사무보조원(타자) 1명과 지방방호원(방호) 1명을 기능직 9등급으로 조정 개정함.

3. 개정근거

-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

4. 참고사항

- 신·구 정원표 — 별 첨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事務局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〈별표1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사무국 직원 정원표 기능직 내용중

-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2을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1,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1로 하고
- 10등급 지방방호원(방호)2을 9등급 지방방호원(방호)1, 10등급 지방방호원(방호)1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1]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事務局職員定員表(舊)

○ 별 정 직

- 비 서(7급상당) 1
- 비 서(9급상당) 1

○ 별정직 또는 일반직

-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

○ 일 반 직

- 지방서기관 1
- 지방행정주사 3
- 지방행정주사보 3
- 지방행정서기 3
- 지방행정서기보 2

○ 기 능 직

-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사 2
-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사 2
-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표결사 1
-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2
- 10등급 지방방호원(방호) 2
- 10등급 지방운전원 2

서울特別市永登浦區議會事務局職員定員表(新)

○ 별 정 직

- 비 서(7급상당) 1
- 비 서(9급상당) 1

○ 별정직 또는 일반직

-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2

○ 일 반 직

- 지방서기관 1
- 지방행정주사 3
- 지방행정주사보 3
- 지방행정서기 3
- 지방행정서기보 2

○ 기 능 직

-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사 2
-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속기사 2
-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필기)-표결사 1
-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1
-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1
- 9등급 지방방호원(방호) 1
- 10등급 지방방호원(방호) 1
- 10등급 지방운전원 2